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추진 방향

Recycle of A Producer liability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심각한 환경문제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지에서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시행을 추진하는 환경부측과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리업계, 금속캔업계의 시행현황 그리고 앞으로 시행할 PET병, 플라스틱업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환경부

1.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개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재활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 및 수입자가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재활용목표량을 정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스스로 재활용에 보다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용어는 생산자가 재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에서 환경친화적인 소재선택, 디자인·포장개선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고, 자체 판매망을 활용한 회수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품목

현행 폐기물예치금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따라서 재활용의무 생산자도 현행 예치금대상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과 달리 1992년부터 가전제품·종이팩·페트병 등에 대해 폐기물예치금제

도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3. 재활용목표량

재활용목표량은 정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제품의 출고량(사용량), 지자체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시설·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연차별 재활용의무총량을 품목별로 결정·고시한다.

재활용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을 경우,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재활용량이 결정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재활용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 목표량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및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생산자는 지자체가 분리수거 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회수한 폐기물을 직접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즉 개정법률안은 기존 재활용사업자 및 단체가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활용사업자의 입지를 현재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로부터는 재활용 부과금을 징수하게 되며, 부과금은 목표량에 미달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실제 비용에 30%를 가산한 금액이 될 것이다.



1. 폐유리병 회수·처리 실행계획

1-1. 회수·재활용 목표

1-1-1. 재활용 목표량

- 2001년(258천 톤) : 1999년도 재활용량 235천 톤(1,597백 만개)보다 10% 증가
- 2002년(265천 톤) : 1999년도 보다 13% 증가
- 2003년(272천 톤) : 1999년도 보다 16% 증가

1-1-2. 판단기준

- 목표량 이상을 재활용한 경우 이행으로 판단. 다만 전년도 출고량이 예상 발생량의 85%이하인

(표 1) 연도별 재활용

| 구 분 | | 1999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
| 예상발생량 | 천톤 | 340 | 340 | 340 | 340 |
| | 백만개 | 2,300 | 2,300 | 2,300 | 2,300 |
| 재활용목표량 | 천톤 | 235 | 258 | 265 | 272 |
| | 백만개 | 1,597 | 1,745 | 1,793 | 1,840 |
| 예상재활용률 | % | 69 | 76 | 78 | 80 |

※ 발생량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평균발생량을 적용

- 경우에는 재활용율이 85%이상인 경우에도 이행으로 판단
 - 목표량 미달시 '미달한 양'에 대해 예치금 부과

1-1-3. 비용·편익

- 업체: 편익 3,754백만원
- 예치금 납부면제액 : 2,300백만개×4.1원/개 = 9,430백만원
- 재활용 비용 : 258천 톤(1,743백만개)×22,000원/톤 = 5,676백만원
- 정부 : 재활용률 7%향상, 예치금면제 손실 1,647백만원
- 예치금 납부면제액 : 9,430백만원-1,743백만개×4.1원/개=2,284백만원
- 1999대비 재활용률 7%향상 : 155백만개(23천 톤)×4.1원/개=637백만원

1-2. 권역별 재활용센터 설치계획

1-2-1. 추진계획 : 2003년까지 전국 4개권역에 설치

[표 2] 참조

1-2-2. 기대효과

- 회수·처리주체를 민간수집업체 중심에서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체계화
-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수집업체(50업체)는 수집대행 계약체결 및 유지
- 일정규모 미만의 민간수집업체는 센터의 하위 수집망으로 지정·운영
- 수급조정(비축) 및 민원해소
- 경기변동(수익성 저하)에 따른 민간수집업체의 수집불균형 해소
- 산간·오지 등 민간업체 수집기피물량에 대한 수집으로 민원해소
- 타용도 재활용 방안 연구
- 제병업체 재활용 능력(270천 톤) 초과(1993년, 272천 톤)대비
 (생산자중심재활용 체계구축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 폐유리병 가공시설의 이양

(표 2) 향후 재활용 확대 계획

| 설치시기 | 권역구분 | 처리규모(천톤/년) | 기능 | 예상소요액(백만원) |
|-------|----------------|------------|--|------------|
| 2001년 | 수도권센터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원료생산(가공) 수집량의 비축 | 900 |
| 2002년 | 중부권센터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원료생산 비축통한 수급조절 | 400 |
| 2003년 | 영남권센터 호남권센터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원료생산 다용도처리 | 700 |
| 합계 | | 20 | | 2,000 |

(유상매각, 장기임대 등) 협의 추진

1-3. 회수·재활용체계

1-3-1. 배출단계

- APT, 사업장 등에서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 학교, 군부대 등 집단 발생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수거 요청

1-3-2. 수거단계

- 지자체에서는 APT 등 가정 배출분을 무상수거 후 재활용센터에 유상매각
- 다량발생사업장은 민간수집상 또는 재활용센터에 유상매각
- 재활용센터와 자원공사는 협회 지정 재활용업체에 운송

1-3-3. 재활용단계

- 재활용센터에서는 수급조절용으로 사용
- 재활용업체에서는 제병원료 또는 적정용도 (건축자재 등)로 재활용

1-4. 처리비용

1-4-1. 제병원료로 활용

- 제병업체의 신병생산 원료로 연간 270천톤 정도 사용가능
- 2003년 이후에는 제병업체의 사용능력 초과

1-4-2. 타용도 재활용 : 재활용제품 생산기술 개발

- 연구 추진 중 : 글라스 아스팔트, 글라스 벽돌, 글라스 콘크리트 등
- 향후 : 기능성 바닥자재, 건축자재(단열재)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1-4-3. 원료로 비축

- 제병업체의 수요 초과량은 타용도 기술개발 시까지 재활용센터 비축 인정 (협약체결 초기 재활용 단계에서는 원료 상태의 비축을 재활용으로 인정)

1-5. 재활용 이행여부 확인

1-4-1. 수집 · 재활용량의 정기적·부정기적 자체확인

- 경로추적(전산화 예정), 매입 · 매출계산서, 계근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
- 랜덤샘플링을 통한 비대상병의 함유율 산출 및 공제

1-4-2. 자료제출 및 감독기관의 확인실사

- 감독기관에 회수 · 처리실적자료 및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 제출
- 감독기관의 정기적, 수시적 확인실사

한 국 금 속 캔 재 활 용 협 회

정부에서는 그동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포장용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 품목의 지정 및 지자체의 분리수거 실시, 포장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발생량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부에 예치하는 폐기물 예치금제도 도입, 생산자에게 회수 목표율 및 이용 목표율을 지정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국내 포장용기 재활용을 촉진시켜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산자(예치금 납부자)는 예치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재활용도 해야 하는 원천적인 책임을 져야만 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정부측에서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재활용 정책은 먼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정책과 발생된 폐기물의 책임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과 그렇지 못한 품목에 대한 차별화를 두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속캔재활용협회가 정부(환경부)와 '생산자책임재활용' 단계로서 자율협약을 조인하기까지는 자발적으로 금속캔을 스스로 회수 ·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효율적 회수처리가 가능토록 한 점과 금속캔 재활용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가진 점, 폐금속캔이 재생원료로써 꾸준한 자원화가 이뤄지도록 하여 업계자체가 회수처리비용을 통해 충분히 금속캔 재활용을 가능토록 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폐금속캔 생산자재활용자발적협약 체결을 통해 금속캔 재활용을 위해서 참여한 생산자는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참여치 못한 생산자도 발 빠르게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이 금속캔 업계에는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 제도 도입 배경

1992년에 도입된 현행 예치금 제도는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시행 초기부터 이 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처음 3년 간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1995년부터 포장용기를 비롯한 생활 폐기물을 중심으로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 때 전국적인 회수·처리 조직을 구축한 금속캔을 비롯한 일부 관련품목의 재활용률이 높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폐기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생산자 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생산자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책임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2.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2-1. 생산자단체의 변화

품목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금속캔의 경우에는 소재업계, 중간가공업계, 최종 제품생산업계 모두가 재활용책임을 지고 있는 생산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금속캔재활용협회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생산자에게 부여된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업계에게는 회수처리비용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현행 예치금 보다 낮은 비용으로 금속캔 재활용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연도별 재활용 목표 합의 및 실적관리를 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회원사에게 정부와 합의한 목표를 달성을 위해 회원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에 의해 회원사별 회수처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금속캔재활용협회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환경부와 협정한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각 품목별 재활용단체들로 하여금 선의의 재활용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 생산자의 변화

폐기물예치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생산자단체인 협회에 회수처리비용(금속캔의 경우

폐기물 예치금 대비 약 28% 감면혜택)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비용경감 효과가 있으므로, 미참여 생산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별 회수·처리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예치금을 반환 받았던 생산자의 경우 예치금을 반환 받아 회수업자에게 비용 지급하는 것 보다 협회에 회수처리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3. 결론

결국 정부는 해당 품목의 폐기물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스스로 재활용을 이룩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생산자 단체는 보다 저렴한 회수처리비용을 들여 최선의 재활용 체계를 통해 최대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면 향후 국민들은 재활용품목 중에서 재활용이 우수한 용기를 택하게 될 것이며, 재활용이 저조한 품목은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화 될 것이다.

한 국 P E T 용 기 업 회

1.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에 관한 PET용기 업계의 입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소비자, 생산자, 정부(지자체) 3자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고, 생산자는 지자체가 수거한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공제조합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제도로서 총론적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다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과정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①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재활용 의무총량을 설정할 때 현실과 노무 동떨어진 높은 의무율을 부과하지 말고 폐기물의 발생량, 지자체의 수거량, 생산자의 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되 연차적으로 높여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재의 수거 체계는 지자체를 비롯하여 재생공사, 민간수집상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 단일화 시켜야 할 것이다.

③ 지자체는 관할구역내의 폐기물 발생량, 수거량을 조사, 공표 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것을 공제조합에 매각하는 의무까지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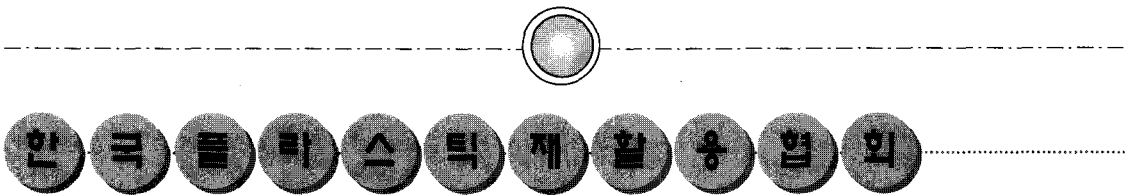
④ 지자체는 수거된 폐PET병을 실회수 비용으로 재생업체에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고가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업체들은 값비싼 원

료구매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실화가 초래될 염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보완, 시행하게 되면 현재의 여건과 접목되는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 상황

PET용기 사업자 단체 역할과 PET병 재활용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사)한국PET용기협회는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환경부와의 자발적 협약을 금년 하반기에 체결할 것을 의결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PET병은 품목 특성상 재활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위탁사업(자금지원)을 하여야 효과적인 점을 감안, 생산자인 Filler, 용기 성형업체 그리고 재활용 업체 3자간의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나근배 /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전무이사

1. 서론

OECD 등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어진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민의 분리배출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수집의무,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생산자는 제품 생산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와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 재생제품의 개발 등에 가장 유리한 여건에 있어 주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이다. 물론 최종적인 비용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만 주책임자의 역할은 생산자가 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자라는 것은 원자재 생산, 용기나 포장재 생산, 음료나 주류 등을 생산하는 최종 Filler를 말한다. 그러면 각종 건축자재,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부품, 농업용 자재, 포장자재 등으로 제품의 종류와 용도가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원료가격의 0.7%를 부담시키는 합성수지 부담금제도가 20여 년간 시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로 전환되면서 원료에 부담되었던 부담금이 제품으로 전



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 1998년 12월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업계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 단체와의 자발적 협정 (Voluntary Agreement) 체결을 위해 약 18개월 동안 수많은 협의를 해 왔지만 환경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 기획예산처에서는 합성수지 부담금을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부담금 폐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2002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정부가 약속한 시간에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우선과제와 시범사업

2-1. 플라스틱 제품의 실태조사가 우선

플라스틱 제품은 매우 다양하다. 각종 용기와 포장재를 비롯해 주방용품, 위생용품, 문구, 완구, 의류, 스포츠, 전자, 자동차, 항공 산업에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폐플라스틱의 발생량이 조사되어야 한다.

폐플라스틱의 발생은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것과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것이 있어 배출처 별 발생량도 파악되어야 한다.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이 생산, 사용과정에서 또는 사용 후 배출될 시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어떠한 제품들이 어느 정도가 재활용되며 단순소각이나 매립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파악되어야 한다. 아울러 단순소각이나 매립처리되고 있는 플라스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생산량 파악은 국립환경연구원이 주축이 되고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으나 보다 현실성 있는 자료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플라스틱 제품 중 생활에서 발생하는 용기와 포장재를 대상으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중 내구성이 있는 파이프나 건축자재, 전자, 자동차 부품들은 나름대로의 대책이 강구되어져 있으나 생활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는 처리의 주책임자가 정해져 있지 못하여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파이프나 건축자재는 건축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르며 전자, 가전제품들은 가전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전제품 재활용 체계의 범주에 자동차 부품들은 폐차처리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나름대로의 처리방법이 강구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용기 중에서도 PET, 캔, 유리, 종이팩 등은 예치금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처리 책임자가 정해져 있으나,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는 예치금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주 처리책임자가 없는 실정이다. 굳이 책임이 있다면 연간 약 2000억원의 합성수지 부담금을 받고 있는 정부에 있

다고 할 것이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중 용기와 포장재의 대책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2-3. PSP용기 재활용시범사업이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역할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중 용기와 포장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주류, 세정재류 등 사용처가 매우 다양하고, 용기나 포장재의 모양과 구성된 재질 등도 매우 다양하여 우선적으로 제반 현황이 파악되어야 한다.

생산 또는 배출되는 양과 이를 재활용하는 비용이 산출되어 용기나 포장재에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책정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행히 라면, 도시락, 트레이 등의 용기인 PSP용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와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주축이 되어 PSP원단, 용기생산자와 라면메이커 등 사용자가 '자발적 협약에 의한 PSP용기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 주축이 되어 2001년 8월부터 서울지역으로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매립이나 단순소각 처리되고 있는 스티로폼용기를 주민들이 깨끗이 배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수 압축 밴딩하여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의 공장에 운반하면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는 운반비를 지원하고 전량 인수 재활용하게 된다. 인수된 스티로폼용기들은 상태가 양호한 것을 다시 재생원료로 하고 상태가 불량한 것들은 고형 연료화 하여 석탄이나 병커C유 등의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를 80%이상 재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작년 4월부터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이 기타 플라스틱 제품에까지 적용되면서 전량 재활용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회수된 플라스틱용기 포장재를 25~30%를 물질재활용(M.R:Material Recycle)과 40~60%를 열 회수방법의 재활용(T.R:Thermal Recycle)을 하고 있다.

스티로폼용기(PSP용기)의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면 현재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각종 케이스류나 포장재들도 재활용 체계가 수월하게 구축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합성수지 제품들에 적용되어졌던 합성수지 부담금제도가 폐지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마치 금속과도 같이 다양한 많은 재질로 구성된 플라스틱 제품들에 대한 재활용 방법이 지금까지는 재생원료 또는 재생제품으로만 재활용되어졌으나, 선진국에서와 같이 복합재질의 재활용 기술과 에너지 회수 재활용 방법이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는 PSP용기 재활용 사업이 M.R과 T.R이 병행하게 되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도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란난좌, 빵, 과자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라면봉지 등 여타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재의 재활용방법이 강구될 것이다. ☐